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-71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3. 26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「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
3. 폐지조례안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【붙임 1】 폐지조례안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 현행조례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15.11.23. 조례 제193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에 의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의회 및 안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
3. 안산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·상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 이라 한다)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.

② 의장, 안산시의회 부의장(이하 “부의장” 이라 한다),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.

제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위촉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분야의 전문가
2. 전직 공무원·시의원, 교수, 회계사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지방의회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

제6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촉해제)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3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 이라 한다)은 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,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전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자문) ① 의장 · 상임위원장 및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

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안 심의 등과 관련되는 공무원,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비변상) ① 위원회의 회의 및 자문,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 등)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